

한·중·일 FTA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 승 택*

I. 서론

최근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의 무역자유화와 양국간 교역체제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이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과 동구권 등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 도입 가속화,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교통이나 통신기술의 발전을 매개로 한 국제적 경쟁의 확산 등 세계화의 추세가 과급되는데 따라 변화하는 대외통상환경에 대한 국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외통상환경의 변화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 없고, 또한 여전히 지속되는 무역 측면에서 일본의 비교우위, 중국의 급속한 부상 등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대외통상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가 무역자유화 물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적인 이득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구조조정 당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실직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고용측면의 과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물론 무역자유화는 생산물시장의 확대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와 연관된 인력수요의 증가라는 효과를 유발시킨다. 또한 이러한 인력수요의 증가는 산업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의 수를 능가하여 전체 고용규모에서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는 순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당해 실직하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단기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에서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것은 명백한 일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tkim@kli.re.kr).

구체적으로 산업별 근로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학력별, 직종별, 기술수준별 구성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정 학력, 직종, 또는 기술수준의 계층에 대해 구조조정의 압력이 크게 나타날 경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별, 직종별, 기술수준별 인력수급의 균형은 무역자유화라는 충격으로 인해 불균형 상태를 거쳐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이며, 특히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 특정 학력, 특정 직종, 특정 기술수준의 근로자들이 대량실직을 당하게 되고, 이들을 다른 산업 또는 직종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재교육 및 훈련, 또는 고용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당 산업이나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 노동시장은 수급의 비효율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로 표출되는 우리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수반되어 나타나게 되는 인력수요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 연구가 한중일 FTA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경합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교역에 있어 연관관계가 크며, 중간부품 교역의 의존도가 큰 것처럼 기술의존도가 높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연간 교역규모가 30% 이상 확대되는 인접 거대경제권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우리의 무역흑자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국가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선점이 필수적이며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일로에 있어 상호간 산업보완관계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양국간 FTA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유명희, 2005).

따라서 이 연구는 한중일 FTA에서 현행 관세가 인하되는 수준의 변화를 기본 시나리오로 단기와 중기를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한중일 FTA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세적으로 살펴보는 의미를 가진다. 다른 국가와의 FTA나 다자간의 협정에 있어서도 관세철폐를 가장 주요한 안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에서 영향을 받는 인력수요의 규모는 각 FTA에 참여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또는 다자간 협정의 결의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II. 분석 모형의 개요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과 모형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GTAP 데이터와 CGE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 산업별 파급효과,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고, 분석 시나리오로 관세율 인하만을 고려하는 단기효과와 관세율 인하와 자본축적이 고려되는 중기효과, 그리고 관세율 인하의 규모를 4단계(삼국간 관세율을 25%, 50%, 75%, 100% 인하)로 구분하는 총 8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추정을 시도했다.

이 연구에 사용되는 CGE-GTAP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경제는 초기 균형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제활동(생산, 수입, 수출 등)에도 초과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생산요소들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는 산업별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으나 국가간에는 자본을 제외하고는 이동하지 않는다. 셋째,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각 효용극대화 및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 넷째, 학력별 취업계수는 기술계수와 마찬가지로 단기·중기적으로 안정적이다.

이 모형은 N개 재화의 시장이 존재하고, 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경제의 균형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18개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므로 18개 생산물시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3개의 생산요소시장(노동시장, 자본시장, 토지시장 등)과 4개국(한국, 중국, 일본, 해외부문)이 존재한다. 상품은 생산요소·무역재·자본재로 구분되며, 무역재와 자본재는 생산재를 구성한다. 이 모형은 행위방정식, 예산제약식, 균형조건을 설명하는 방정식 체계로 균형을 찾아나간다.¹⁾

III. 생산물시장에 미치는 효과

한중일 FTA 체결이 3국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자유무역 혹은 관세율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 FTA 체결의 효과는 관세율의 인하폭이 클수록 생산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기

1) 모형과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김승택·지해명(2006)의 부록을 참조.

에서는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므로 단기보다는 생산증대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기를 기준으로 국가별로 보면 한·중·일 3국 중에 한국의 생산증대효과가 가장 크며, 그 증가율은 0.78%(25% 인하)~3.14%(100% 인하)로 나타나게 된다. 일본은 0.24~0.95%로 단기에 비하여 크게 증대되지는 않으며, 가장 생산증대효과가 작은 중국 역시 단기에 비하여 성장률이 매우 증대되어 0.20~0.80%의 성장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세 국가 모두 관세율의 인하 정도와 성장효과의 비율 변화간에는 큰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단기에 비하여 성장률이 약 2배 정도 증가된 0.785%p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은 0.236%p로 단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중국은 0.201%p로 단기에 비하여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게 된다.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의 성장효과가 가장 크며, 단기에는 한국-일본-중국 순이었으나 중기에는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성장효과가 나타난다. 단기에 생산증대효과보다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크며, 이는 중기에도 유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의 2.5배에 가까운 0.95%(25% 인하)~3.71%(관세철폐), 중국은 0.26~1.15%의 성장효과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단기와 비슷한 수준인 0.25~0.98%의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관세율 변화와 부가가치 성장률간의 비교에서는 일본은 단기·중기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은 관세율이 25%에서 50%로 변화될 경우 약 0.1%p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며,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50%에서 75%로 인하율이 변화되었을 때 부가가치 성장률이 높아졌다가 다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인하율의 폭과 부가가치율의 변화간에 일률적인 관계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FTA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에는 적자, 중기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되며, 인하율이 높을수록 흑자폭도 커지게 되는데 0.135(10억달러)~0.542(10억달러) 수준을 유지한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단기와 마찬가지로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게 되지만 적자폭이 작아지는 개선효과를 보이게 된다.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0.001~-0.005(10억달러)에 달하며, 중국은 -0.127~-0.509(10억달러)에 이르러 된다. 관세율의 인하폭과 적자폭은 비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3개 국가간 FTA가 체결되면 중기적으로는 무역수지가 단기에 비하여 개선되지만 한국의 경우 흑자로의 반전이 발생하고, 일본과 중국의 적자폭 증대가 나타나는 것이 한·중·일 FTA 체결이 가져오는 효과의 특징으로 보인다.

한·중·일간의 관세인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일반적으로 단기·중기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데 반해, 농업 및 관련 업종(작물, 채소 및 기타 작물, 축산, 기타 음식료품)에서는 생산감소가 나타나고 그 규모는 단기에 비하여 중기에 약간 감소한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은 단기와 중기 모두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며 그 규모는 중기가 단기에 비하여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단기에 산업별 생산에서 생산감소

로 나타났던 축산, 비금속금속제품, 일반기계산업이 중기에는 생산이 증대되는 산업으로 변화되어 자본축적효과가 이러한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생산변화를 보면 생산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은 작물로 단기에 비하여 중기의 감소폭이 작은바 -596.7백만달러(25% 인하)~2279.0백만달러(100% 인하, 관세철폐)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수송장비 -233.6~943.7(백만달러), 채소 및 기타식용작물 -108.0~441.2(백만달러)의 순이다. 생산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그 증가폭은 4,766.6~19,216.5(백만달러)이며, 차순위로 석탄석유화학산업 1,465.8~5,881.7(백만달러), 섬유 의류 가죽업 1,146.4~4,591.8(백만달러), 전기기계 574.7~2,307.4(백만달러)의 순이다.

관세율 인하폭에 따라 생산의 변화율이 비교적 다르게 나타나는 업종은 작물, 축산, 육류 및 낙농제품, 기타음식료품이다. 작물의 경우에는 25%에서 50%로의 관세율 변화시 -5.73%p, 50%에서 75%로의 관세율 변화시 -5.56%p, 75%에서 100%로의 관세율 변화시 -5.38%p로 감소폭이 작아지며, 육류 및 낙농제품 역시 그 변화폭이 각각 0.57%p, 0.53%p, 0.49%p로 낮아진다. 축산은 0.13%p, 0.07%p, 0.019%p, 기타음식료품의 경우에는 -0.11%p, -0.19%p, -0.26%p로 그 효과가 증대된다.2)

<표 1> 관세율 인하와 생산변화: 단기

(단위 : 백만달러, %)

	<시나리오 1> 25% 인하		<시나리오 2> 50% 인하		<시나리오 3> 75% 인하		<시나리오 4> 100% 인하	
	산출액	변화율	산출액	변화율	산출액	변화율	산출액	변화율
곡 물	-618.9	-6.13	-1,218.8	-12.08	-1,798.6	-17.82	-2,359.0	-23.37
채소 등 기타	-132.4	-1.18	-266.7	-2.38	-401.8	-3.59	-539.6	-4.82
축 산	-8.7	-0.13	-21.2	-0.30	-38.0	-0.54	-57.9	-0.83
임산물	4.8	0.64	9.5	1.28	14.3	1.93	19.1	2.56
수산물	28.9	1.19	57.9	2.39	87.0	3.59	116.3	4.80
광산물	-19.0	-1.10	-38.0	-2.20	-57.1	-3.30	-76.3	-4.42
육류 및 낙농품	20.4	0.33	38.3	0.62	53.9	0.87	67.2	1.08
기타음식료품	-95.8	-0.27	-216.1	-0.60	-358.6	-1.00	-520.3	-1.45
섬유의류가죽	969.8	2.78	1,942.2	5.57	2,918.8	8.38	3,894.3	11.18
목재·종아·출판	154.4	0.76	310.2	1.53	464.0	2.28	620.6	3.05
석탄석유화학	1,023.1	1.13	2,053.1	2.28	3,079.7	3.41	4,109.5	4.56
비금속금속제품	-325.5	-0.48	-656.6	-0.97	-991.3	-1.47	-1,330.2	-1.97
자동차 및 부품	-170.6	-0.40	-344.4	-0.80	-519.9	-1.21	-697.7	-1.62
기타수송장비	-325.8	-2.63	-654.9	-5.29	-985.5	-7.96	-1,320.0	-10.66
전기기계	55.2	0.08	112.8	0.16	165.2	0.24	217.2	0.31
일반기계	-484.9	-0.65	-975.6	-1.30	-1,472.1	-1.96	-1,974.5	-2.63
기타제조업	26.0	0.45	52.3	0.91	77.9	1.36	104.2	1.82
서비스	3,208.1	0.67	6,431.2	1.35	9,631.1	2.02	12,884.1	2.71
전 체	3,309.1	0.34	6,615.3	0.68	9,869.4	1.02	13,156.8	1.36

2) 지면관계상 일부 표는 생략하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표는 김승택·지해명(2006)을 참조.

<표 2> 관세율 인하와 생산변화: 자본축적(중기)

(단위: 백만달러, %)

	<시나리오 1> 25% 인하		<시나리오 2> 50% 인하		<시나리오 3> 75% 인하		<시나리오 4> 100% 인하	
	산출액	변화율	산출액	변화율	산출액	변화율	산출액	변화율
작 물	-596.7	-5.91	-1,175.3	-11.65	-1,736.1	-17.20	-2,279.0	-22.58
채소 등 기타	-108.0	-0.96	-217.4	-1.94	-328.3	-2.93	-441.2	-3.94
축 산	13.5	0.19	22.7	0.33	27.6	0.40	28.6	0.41
임산물	6.1	0.82	12.3	1.65	18.4	2.48	24.6	3.31
수산물	38.5	1.59	77.2	3.18	116.1	4.79	155.2	6.40
광산품	-7.4	-0.43	-14.9	-0.86	-22.4	-1.29	-29.8	-1.73
육류 및 낙농품	38.4	0.62	74.1	1.19	107.2	1.72	137.6	2.21
기타음식료품	-14.2	-0.04	-54.8	-0.15	-121.8	-0.34	-215.0	-0.60
섬유의류가죽	1,146.4	3.29	2,293.9	6.58	3,442.3	9.88	4,591.8	13.18
목재·종이·출판	246.7	1.21	494.6	2.43	743.6	3.66	994.3	4.89
석탄석유화학	1,465.8	1.63	2,934.9	3.25	4,405.6	4.89	5,881.7	6.52
비금속금속제품	120.5	0.18	240.1	0.36	360.1	0.53	476.6	0.71
자동차 및 부품	-13.5	-0.03	-27.5	-0.06	-42.7	-0.10	-59.2	-0.14
기타수송장비	-233.6	-1.89	-468.9	-3.79	-705.5	-5.70	-943.7	-7.62
전기기계	574.7	0.83	1,151.1	1.66	1,727.7	2.49	2,307.4	3.33
일반기계	90.0	0.12	179.7	0.24	269.0	0.36	360.9	0.48
기타제조업	53.5	0.94	107.2	1.87	161.1	2.82	215.3	3.76
서비스	4,766.6	1.00	9,551.8	2.01	14,365.2	3.02	19,216.5	4.04
전 체	7,587.4	0.78	15,180.6	1.57	22,787.3	2.35	30,422.6	3.14

간접적으로 산업별 자산축적의 효과를 성장률의 단순차감(산업별 중기생산-단기생산)으로 비교하면 그 효과가 큰 산업으로는 일반기계, 기타 수송장비업, 전기기계로 나타나고 있다. 효과가 작은 산업으로는 임산물, 작물, 기타음식료품, 채소 및 기타식용작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농업 및 관련 산업에서의 자본축적의 저하(투자부진)가 이러한 여건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IV. 고용에 미치는 효과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가 단기·중기 인력수요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는 긍정적(인력수요의 순증가)이며, 단기보다는 중기에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단기의 경우 3국 모두 현행 관세율의 25% 인하시 전체적으로 약 3,800명의 인력수요가 증가되고, 50% 인하시 8,800명, 75% 인하시 14,400명, 100% 인하시(관세철폐) 21,800명의 인력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는 각 산업에서 발생하는 인력수요의 감소와 증가가 서로 상쇄되고

남은 순규모 개념의 수치로서 각 부문별로 차이는 있으나 단기에 있어 한중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기를 기준으로 하면 관세율을 25% 인하할 경우 전반적으로 47,400명, 50% 인하시 96,000명, 75% 인하시 146,000명, 100% 인하시(관세철폐) 197,500명의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 규모는 단기와 비교할 때 큰 폭의 인력수요 증가를 의미하며 자본의 이동으로 인해 자본축적이 발생한다면 한중일 FTA가 노동시장에 일정규모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한중일 FTA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인력수요의 감소가 나타나는 산업으로는 100% 관세인하시 작물에서 총 173,300명, 채소 및 기타에서 36,800명, 일반기계에서 14,200명, 기타수송장비에서 8,400명, 비금속금속제품에서 6,200명 등의 순으로 인력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력수요의 증가는 대부분 서비스업(205,400명)에서 나타나며 농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인력수요의 감소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상쇄가 되는 것은 현실 노동시장에서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력수요가 감소하는 산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실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산업별로 작물업은 현행 관세를 철폐하는 관세율의 100% 인하시 134,700명이 감소하여 단기에 비하여 감소폭이 다소 낮아지게 된다. 차순위인 채소 및 기타는 100% 인하시 24,23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에 비하여 중기적으로 감소폭이 작아진다. FTA 체결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역시 중기적으로 더욱 커지게 되는데 서비스업에서는 100% 인하시 93,700명의 인력수요 증가가 나타나게 된다. 차순위의 섬유·의류·가죽업에서는 100% 인하시 5,400명의 인력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단기에 인력수요 감소요인으로 나타났던 축산업, 비금속금속제품, 일반기계업종에서는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된다.

학력별로는 단기에 있어 중졸 이하 근로자는 25%를 인하할 경우 27,000명의 인력수요 감소에서 인하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소폭이 증대되어 100% 관세인하의 경우에는 102,600명의 인력수요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학력 노동자의 25% 관세인하시 16,400명의 인력수요 증가에서 100%의 관세를 인할 경우 66,600명의 인력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졸 이상 학력에서는 25%의 관세인하시 14,400명의 인력수요 증가에서 100%의 관세인하시 57,800명의 인력수요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체결은 저학력자의 경우는 인력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그리고 고학력자의 경우 인력수요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나타난다.

중기에 있어서는 중졸 이하의 경우 25%를 인하할 경우 12,900명의 인력수요 감소를 기록하고 100% 관세인하의 경우에는 46,300명의 인력수요 감소가 유발되어 여전히 관

세인하의 규모가 클수록 인력수요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단기와 비교할 때는 인력수요 감소의 폭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저학력에 대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는 서서히 감소하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고졸학력 노동자의 경우에는 100%의 관세를 인하할 경우 145,900명의 인력수요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 단기의 경우보다 두 배 이상의 증가가 나타난다. 대졸 이상 학력의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의 관세인하시 97,900명의 인력수요 증가가 촉진될 것으로 추정되고, 단기에 비해 약 1.7배 더 큰 규모의 증가가 나타난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중기 고용효과는 일반적으로 단기에 비하여 인력수요의 감소추세는 둔화되고, 인력수요의 증가추세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농산물 관련 산업과 저학력자의 경우 여전히 지속적인 인력수요의 감소가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중기에서도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작물과 채소 및 기타의 부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며, 그 외 산업에서는 인력수요의 감소가 완화 내지는 증가로 역전되고, 단기적으로 인력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던 산업들은 그 증가의 규모가 확대된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의 노동자 경우 그 규모는 다소 축소되지만 여전히 인력수요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고졸 이상의 학력에서는 인력수요 증가현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므로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고용증대효과는 산업별로 예외는 있으나 단기에 비하여 중기에, 관세의 부분감소보다는 완전철폐할 때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면에는 특정 산업에서와 저학력 근로자에 대한 인력수요 감소를 동반한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체결은 노동시장에 전반적으로 인력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산업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율 인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대부분의 직종에서 인력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산업별 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인력수요의 감소를 보이는 직종은 농업숙련종사자로 한중일의 관세를 25% 인하시 11,700명, 100% 인하시 45,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중일 FTA가 동시에 발효되어 관세가 100% 철폐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심각한 인력수요의 감소(단기에 1,000인 이상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12,100명),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종사자(7,900명), 과학관련 기술종사자(7,500명), 공학전문가(4,300명), 금속기계 및 관련기능종사자(2,200명), 기타 준전문가(1,700명), 행정경영 및 재정전문가(1,2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건대 한중일 FTA는 단기적으로 농업부문의 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 모두에게 규모 측면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으로 공학과 과학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고속련 및 중간단계의 전문가 및 준전문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속 및

기계와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기능종사자들도 인력수요의 감소라는 악영향이 예상되나 그 외의 기계설치 및 정비,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타 기능종사자 등의 직종에서는 오히려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력수요의 측면에서 농업의 경우 종사자의 직종에 관계없이 가장 큰 규모의 감소가 발생할 것이며, 제조업의 경우 저숙련 기능을 가진 인력보다는 중간단계의 기능을 가진 관련 직종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산업에서의 기능인력 등에서 인력수요의 감소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관세율의 인하가 커질수록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인력수요의 증가를 보이는 직종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종사자로 한중일의 관세를 25% 인하시 3,800명, 100% 인하시 15,5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규모는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종사자의 규모가 다른 직종에 비해 큰 데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 외 한중일 FTA가 동시에 발효되어 관세가 100% 철폐되었을 때 큰 규모의 인력수요 증가(단기에 7,000인 이상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은 기계조직원 및 관련종사자(11,700명), 교육전문가(10,900명),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8,300명), 고객서비스사무종사자(7,700명),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7,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중기에 들어서게 되면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인력수요의 감소 추세가 완화되고 대부분의 직종에서 인력수요의 증가가 나타나게 된다. 예외적으로 농업숙련종사자는 장기에서조차 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어 한중일의 관세를 25% 인하시 10,700명, 100% 인하시 41,2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와 같이 장기에서도 여전히 큰 규모의 인력수요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는 직종 중에 심각한 인력수요의 감소(중기에 5,000인 이상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은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종사자(관세가 100% 철폐되었을 때 7,024명 감소), 과학관련 기술종사자(관세가 100% 철폐되었을 때 6,554명)로 나타나고, 그 외에 단기적으로 인력수요의 감소를 겪었던 직종들은 대부분 증가추세로 바뀌거나 무시할 정도로 작은 수치의 취업자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기에 관세율의 인하가 인력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직종 중 가장 큰 증가 규모를 보이는 직종은 역시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종사자로 한중일의 관세를 25% 인하시 6,100명, 50% 인하시 12,200명, 75% 인하시 18,400명, 100% 인하시 25,0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중일 FTA가 동시에 발효되어 관세가 100% 철폐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큰 인력수요의 증가(중기에 10,000인 이상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은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18,800명), 교육전문가(16,300명), 기계조직원 및 관련종사자(14,900명), 고객서비스사무종사자(12,300명),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11,900명) 등의 순으로 앞서 단기와 비교하여 기계조직원 및 관련종사자의 순서가 차순위에서 몇 단계 뒤로 미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수준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의 경우 아주 고속련 인력인 기술사 수준에서는 인력수요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으나, 그 다음 단계의 고속련 인력인 기사의 경우 25% 인하시 2,900명, 50% 인하시 5,600명, 75% 인하시 8,300명, 100% 인하시 10,8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간단계의 기술수준인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도 단기의 경우 인력수요의 감소가 나타나는데, 특히 기능사의 경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경우 9,500명에 달하는 취업자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조심해서 해석해야 할 것은 각각의 해당 기사나 기능사에 이러한 충격이 온다기보다는 어떤 기술수준에서 충격이 오는지에 대한 추세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중일 FTA는 중간단계에서 고속련으로 접어드는 수준의 기술자들의 인력수요를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술수준별로는 기타 공인면허 자격증소지자가 한중일의 관세가 100% 인하될 경우 단기적으로 27,800명의 인력수요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표 3> 관세율의 인하가 고용측면에 미치는 효과: 산업별·학력별(단기)

(단위: 명)

	<시나리오 1> 25% 인하				<시나리오 4> 100% 인하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작 물	-36,573	-7,640	-1,247	-45,460	-139,399	-29,121	-4,753	-173,273
채소 등 기타	-7,273	-1,519	-248	-9,040	-29,637	-6,191	-1,011	-36,839
축 산	-300	-63	-10	-373	-1,989	-416	-68	-2,473
임산물	204	43	7	253	814	170	28	1,011
수산물	436	91	15	542	1,756	367	60	2,182
광산품	-73	-57	-6	-136	-295	-229	-24	-548
육류 및 낙농품	29	24	9	63	97	81	30	208
기타음식료품	-235	-196	-74	-505	-1,278	-1,062	-401	-2,741
섬유의류가죽	1,148	4,371	5,049	10,568	4,611	17,551	20,274	42,436
목재·종이·출판	401	641	324	1,365	1,611	2,575	1,302	5,489
석탄석유화학	801	1,205	461	2,468	3,217	4,841	1,853	9,911
비금속금속제품	-236	-848	-431	-1,514	-964	-3,464	-1,760	-6,188
자동차 및 부품	-106	-365	-141	-612	-432	-1,491	-577	-2,501
기타수송장비	-356	-1,231	-477	-2,065	-1,444	-4,989	-1,932	-8,365
전기기계	41	126	63	230	163	496	246	905
일반기계	-645	-1,930	-917	-3,491	-2,626	-7,859	-3,732	-14,217
기타제조업	108	189	51	347	432	755	203	1,390
서비스	15,635	23,543	11,967	51,144	62,791	94,550	48,060	205,400
전 체	-26,994	16,384	14,395	3,785	-102,573	66,563	57,798	21,788

중기 기술수준별로 오직 기사수준에서 100% 관세철폐시 약 800명 정도의 인력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그 외의 기술수준에서는 모두 인력수요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타 공인면허자격증소지자가 한·중·일의 관세가 100% 인하될 경우 중기적으로 51,400명의 인력수요 증가가 나타나는데, 특히 단순 및 기타근로자는 29,200명으로 단기(100% 관세철폐시 5,421명)에 비해 큰 규모의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직종별로는 중기의 경우 농업관련종사자와 과학관련기술종사자의 경우 여전히 인력수요의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지배적인 직종으로 나타나고, 그 외의 직종들은 단기의 추세에서 역전되어 인력수요의 증가추세로 전환되거나 증가추세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기술수준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사의 수준에서 약간의 인력수요 감소가 지속되지만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그 외의 모든 기술수준에서는 인력수요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며 증가추세를 가지고 있던 기술수준에서는 인력수요 증가규모가 확대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 관세율의 인하가 고용측면에 미치는 효과: 산업별·학력별(중기)

(단위: 명)

	<시나리오 3> 75% 인하				<시나리오 4> 100% 인하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작 물	-35,259	-7,366	-1,202	-43,827	-134,670	-28,133	-4,592	-167,396
채소 등 기타	-5,929	-1,239	-202	-7,370	-24,230	-5,062	-826	-30,118
축 산	462	97	16	575	981	205	33	1,219
임산물	261	55	9	325	1,051	220	36	1,307
수산물	581	121	20	722	2,343	489	80	2,912
광산품	-29	-22	-2	-53	-115	-89	-9	-214
육류 및 낙농품	56	46	17	119	199	165	62	427
기타음식료품	-35	-29	-11	-75	-528	-439	-166	-1,133
섬유의류가죽	1,357	5,167	5,968	12,493	5,437	20,695	23,906	50,038
목재·종이·출판	641	1,024	518	2,182	2,582	4,126	2,086	8,794
석탄석유화학	1,147	1,727	661	3,535	4,604	6,929	2,652	14,185
비금속금속제품	87	314	159	561	345	1,241	631	2,217
자동차 및 부품	-8	-29	-11	-48	-37	-127	-49	-212
기타수송장비	-256	-883	-342	-1,481	-1,033	-3,567	-1,381	-5,980
전기기계	431	1,312	652	2,394	1,728	5,267	2,617	9,612
일반기계	120	358	170	648	480	1,436	682	2,598
기타제조업	222	388	104	714	892	1,560	420	2,871
서비스	23,230	34,980	17,780	75,990	93,652	141,020	71,681	306,352
전 체	-12,921	36,020	24,304	47,404	-46,320	145,938	97,862	197,480

<표 5> 관세율 인하가 고용측면에 미치는 영향: 직종별(2004년 기준)

(단위: 명)

	단 기				중 기			
	25% 인하	50% 인하	75% 인하	100% 인하	25% 인하	50% 인하	75% 인하	100% 인하
02 행정 및 경영관리자	-290	-538	-759	-925	958	1,959	2,999	3,824
03 일반관리자	101	232	382	578	988	2,008	3,059	4,117
11 과학전문가	-209	-409	-603	-788	-112	-216	-312	-412
12 컴퓨터관련 전문가	813	1,629	2,439	3,262	12,330	2,464	3,706	4,966
13 공학전문가	-1,142	-2,233	-3,284	-4,267	7	66	179	209
14 보건의료 전문가	1,429	2,867	4,297	5,756	2,229	4,470	6,725	9,325
15 교육전문가	2,722	5,457	8,172	10,932	4,045	8,105	12,189	16,313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324	-633	-928	-1,204	-53	-89	-110	-72
1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전문가	223	447	669	895	330	663	997	1,332
18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710	1,423	2,133	2,850	1,005	2,013	3,025	3,713
21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1,948	-3,854	-5,716	-7,535	-1,735	-3,431	-5,089	-6,554
2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771	1,549	2,320	3,109	1,400	2,808	4,226	5,661
23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3,216	-6,300	-9,284	-12,095	419	978	1,676	2,386
24 보건의료 준전문가	519	1,040	1,558	2,085	787	1,578	2,374	3,208
25 교육 준전문가	556	1,114	1,669	2,232	826	1,656	2,490	3,335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1,159	2,326	348	4,669	1,896	3,802	5,719	7,343
27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236	474	709	949	351	703	1,057	1,410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67	136	207	282	160	323	489	686
29 기타 준전문가	-482	-917	-1,319	-1,657	798	1,646	2,540	3,377
31 일반사무관련 종사자	-643	-947	-1,042	-655	9,566	19,495	29,747	4,075
3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1,911	3,836	5,752	7,707	3,023	6,063	9,126	12,264
41 대인서비스관련 종사자	537	1,076	1,612	2,156	799	1,601	2,408	3,228
42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1,741	3,493	5,235	7,012	2,776	5,568	8,374	11,901
43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30	60	90	120	46	91	138	184
44 보안서비스종사자	88	180	273	375	226	457	693	938
51 도소매판매종사자	1,363	2,739	4,110	5,512	2,218	4,452	6,699	9,102
52 통신판매종사자	106	212	318	425	158	317	477	665
53 모델 및 홍보종사자	6	12	18	24	9	18	27	36
61 농업숙련종사자	-11,654	-23,069	-34,222	-45,138	-10,697	-21,170	-31,426	-41,227
62 임업숙련종사자	-25	-49	-73	-96	-20	-39	-58	-76
63 어업숙련종사자	64	127	191	256	85	170	255	341
71 추출 및 건설기능 종사자	189	381	573	774	548	1,102	1,662	2,199
72 금속, 기계 및 관련기능종사자	-547	-1,102	-1,664	-2,232	44	86	127	143

<표 6>의 계속

(단위 : 명)

	단 기				중 기			
	25% 인하	50% 인하	75% 인하	100% 인하	25% 인하	50% 인하	75% 인하	100% 인하
73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종사자	553	1,152	1,772	2,466	2,342	4,736	7,179	9,541
7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기능종사자	157	315	469	626	423	847	1,272	1,725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304	2,617	3,943	5,276	2,048	4,117	6,148	7,535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조작종사자	-243	-474	-700	-909	714	1,445	2,186	2,897
82 기계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2,939	5,866	8,771	11,660	5,300	10,606	15,864	14,925
83 조립종사자	-973	-1,958	-2,964	-398	951	190	2,853	3,464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2,010	4,074	6,148	8,323	4,360	8,781	13,262	18,758
91 서비스관련 단순 노무종사자	3,846	7,721	11,574	15,507	6,094	12,222	18,391	24,978
92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종사자	-2,034	-4,027	-5,974	-7,880	-1,859	-3,679	-5,462	-7,024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종사자	1,095	2,169	3,212	4,241	2,297	4,595	6,826	1,441
94 광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272	546	817	1,092	425	852	1,281	1,645
총 합	3,784	8,760	14,389	21,787	47,404	96,138	145,989	197,479

<표 7> 관세를 인하가 고용측면에 미치는 영향 : 기술수준별(2001년 기준)

(단위 : 명)

	단 기				중 기			
	25% 인하	50% 인하	75% 인하	100% 인하	25% 인하	50% 인하	75% 인하	100% 인하
기술사	40	92	151	228	449	911	1,386	1,876
기 사	-2,886	-5,635	-8,275	-10,739	-398	-660	-783	-751
기능장	-17	-32	-46	-56	75	152	232	316
산업기사	-87	-154	-208	-233	503	1,027	1,573	2,145
기능사	-2,480	-4,888	-7,242	-9,500	159	402	718	1,131
기타공인면허자격증소지	6,817	13,742	20,659	27,803	12,650	25,423	38,331	51,422
자격증 없는 기능자	-1,001	-1,909	-2,748	-3,474	3,902	7,919	12,009	16,230
수습근로자	2	6	11	19	101	205	310	419
단순 및 기타근로자	1,180	2,486	3,860	5,421	7,092	14,346	21,660	29,169
해당 없음	2,217	5,052	8,226	12,319	22,870	46,413	70,552	95,521
총 합	3,784	8,760	14,389	21,787	47,404	96,138	145,989	197,479

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한중일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단기보다는 중기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산업별로 단기와 중기에 걸쳐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학력, 직종, 기술수준별 근로자들에게는 실직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균형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총량적으로 볼 때 한중일 FTA의 체결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의 압력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근로자 집단이 존재하며, 또한 인력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는 산업이나 직종에서도 그 산업이나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갖추어져야만 필요인력의 초과수요라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으므로 실직의 위기로 몰리게 되는 피해집단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FTA를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에 발생하는 충격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책의 사례로는 멕시코의 PROCAMPO(Program of Direct Payments to the Countryside)제도와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이 있다.

멕시코는 1994년 NAFTA 체결로 인해 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PROCAMPO 제도를 1993년에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목적은 첫째, 농민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고, 둘째, 비교우위 작목으로의 생산전환을 촉진하며, 셋째, 미래소득에 대해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고, 넷째, 산림회복 및 토양보존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 농업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추구했다. PROCAMPO제도의 특징은 현재 생산량이 아니라 과거의 경작면적에 근거하여 관련농가에 직불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농림분야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본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1962년 Trade Expansion Act를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1974년 무역법을 통해 현재의 틀을 갖추었으며, 2002년 제반 법령을 통합한 무역조정지원개혁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Reform Acts: TAARA)이 제정되었다. 먼저 지원의 대상은 각 프로그램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충격으로 최근 1년간 농수산물 평균가격이 지난 5년 평균가격의 80% 이하로 하락한 경우의 농어민, 수입증대로 인해 국내기업 생산 또는 판매가 1년 동안 25% 이상 감소된 산업피해 중소기업, FTA 체결로 인해 실직된 또는 실직우려가 있는 근로자, 최근 3년간 무역조정지원을 받은 근로자수가

일정규모(도시: 500, 농촌: 300) 이상이고 지역실업률이 국내실업률보다 1% 이상 높은 경우의 지원대상 공동체 등이다. 지원방법은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실직노동자에게는 무역조정수당, 임금보전수당, 의료보험혜택료, 구직수당, 직업재배치수당 등을 지급한다. 또한 기업이나 농민에게는 정보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직업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역구조조정지원개혁법은 근로자에 관한 지원업무는 노동부가, 기업공동체 및 어민은 상무부가, 농민은 농림부가 담당한다(안세영, 2005).

우리나라에서도 FTA의 체결은 많은 이해집단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한중일 FTA의 체결이 노동시장에 가져오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생산물 측면에서는 작물, 채소 및 기타 업종의 생산기반 위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학력별로는 저학력 근로자, 직종별로는 농업관련 종사자와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기술수준별로는 기사자격을 전후한 중간단계 수준의 근로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에 의해 피해를 입는 대상을 구분하는데 있어 인력수요의 감소가 나타나는 관련산업과 직종을 우선적인 범위에 포함시키고 중기보다 단기에 나타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전직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중기가 되어서도 구조조정이 계속 발생하고 인력수요의 감소가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직종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의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에 따라 처음 협상 때부터 관세율 인하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특히 작물의 경우 대중국 관세율 인하가 주요 안건으로 지적됨)가 있으며, 세이프가드 등의 피해방지 내지는 완화조치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해당 사업체들의 전업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피해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산업, 직종, 학력수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전직지원서비스와 교육 및 훈련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분야로 전직을 하거나, 기술을 축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은 이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 중 FTA의 영향으로 인력수요의 증가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가 될 것이다. 또한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부문의 직종과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노동력과 직장을 찾고 있는 구직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상이나 구제대책은 산업별, 직종별, 학력별, 기술수준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고안하는데 있어 중기보다는 단기의 피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그리고 특정 산업에서의 근

로자들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직종별 분석에서 어떤 종류의 전직지원서비스가 필요할 것인지, 기술수준별 분석으로부터 어떤 수준의 재교육 및 훈련이 이러한 정책을 잘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산업과 직종 등의 분류에 있어 보다 세밀한 분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관세율 외의 무역자유화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 등 이번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아직 많다. 그러나 앞으로 무역자유화의 세부 내역이 구체화되고, 관련데이터가 수집되고, 이에 대한 분석수단을 더욱 발전시키면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KLI**

<참고문헌>

- 김승택·지해명(2006), 『무역자유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안세영(2005), 「FTA정책 국내여건 평가 및 외국의 정책사례 연구」, 정인교·노재봉 편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pp.255~297.
- 유명희(2005), 「우리 정부의 FTA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정인교·노재봉 편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pp.157~184.
- 정인교·조용균·권영민·이홍배·조현준·김은지·최태욱·안세영(200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ertel, Tom(2004), GTAP Database, Purdue University.
- _____ (2005), GTAP Database, Purdue University.